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목 차>

1.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규제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 성 자	이름	정구봉
	담당부서 (과)	산재보상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代	김규석		연락처	044-202-8838
	과장	오태웅		이 메 일	050006033@mail.go.kr

2021. 09. 3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2.규제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3.위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9.10 ~ 2021.10.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8.1.1. 요양급여 신청시 산재근로자의 보험 발생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 사업주 날인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산재 신청건이 대폭 증가하고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간 재해경위에 대한 이견이 증가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신청에 대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데 - 현행제도 하에서 재해조사 실시 이전에 제출된 요양 신청서에 대해 사업주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다시 재해자에게 알리는 형태로 처리 - 이와같이 사업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산재 신청에 대한 결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함(산재처리 기간 약 30일 가량 지연) ○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경위로 사업주 의견을 대체할 수 있고, - 업무상 질병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및 취급 정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의견제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신청서 접수 통보 시 사업주 의견을 제출 받는 것 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에 따른 사업장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진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진술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주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 산재 처리기간만 장기화 시키고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간 불신만 가중시키는 사업주 의견제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산재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7.규제내용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임의)권리가 제약됨		
	8. 피규제 집단	○ 요양신청서가 제출되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요양신청서가 제출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간 11만여건 요양신청서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요양신청서 접수 통보 시 사업주 의견 조회 제출 생략으로 업무상 질병처리기간을 30일 가량 단축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인 신속한 보상 구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의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확인불가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 단축	확인불가		
		주요내용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상 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 토록 하는 것으로 재해발생건에 대한 사업주 의견을 듣는 제도로서 이로 인한 비용 등 정량적인 추산은 불가능함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임의규정임)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요양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은 제출 생략에 따른 정량적 비용분석이 어려워 비용관리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판단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 용	편 의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생략)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u><후단 삭제></u>
③ 공단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u><삭 제></u>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18.1.1. 요양급여 신청시 산재근로자의 보험 발생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면서
 - 사업주 날인없이 산재 신청 가능해지면서 산재 신청건 대폭증가*
 - * 산재신청건수(건): ('17) 113,716 → ('18) 138,576 → ('19) 147,678 → ('20) 147,512
 - 또한, 사업주 날인없이 산재신청하는 건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와 산재 신청인간 재해경위에 대한 이견이 많아지고
 - 상호 의견에 대하여 주고받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당사자간 불신만 가중되고, 당사자간 이견이 큰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더 많이 길어짐
 -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일): ('17) 149.2 → ('18) 166.8 → ('19) 186.0 → ('20) 172.4
- 요양신청 통보시 업무상질병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제출 확인결과 2,901건('21.1.~7.) 보험가입자 제출은 접수일부터 평균 30.8일 소요됨

(단위: 건, %)

구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접수일부터 10일 ~ 20일 제출		접수일부터 20 ~ 30일 제출		접수일부터 30일 초과 제출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건수	763	26.6	882	30.7	460	16.0	765	26.7
질병 처리기간	123.3		137.9		150.4		191.2	

- 하지만,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가 제출한 재해에 대한 의견 중 업무상 질병은 산재판정 결과와의 일치율*은 50% 수준으로 사업주 의견제출의 실효성은 높지 않음

* <사업주 의견제출과 산재 판정 일치율>

(단위: 건, % / 사업주 의견제출 건수는 인정+불인정 의견 합계)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사고	질병	사고	질병	사고	질병	사고	질병
사업주 의견제출 건	85,933	9,324	98,582	10,490	103,133	13,972	101,133	14,102
판정 일치 건	80,422	5,283	93,015	6,147	97,585	7,860	95,469	7,852
판정 일치율	93.6	56.7	94.4	58.6	94.6	56.3	94.4	55.7

- 또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경위로 사업주 의견을 대체할 수 있고,

<산재신청 대비 산업재해조사표 입수 현황>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 신청 건수	97,932	97,252	98,093	114,687	124,988	123,921
조사표 입수	59,791	55,451	55,847	61,469	68,580	75,466

- 특히, 업무상 질병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및 취급 정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의견제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을 제출받는 것보다 공단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진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판정위원회 진술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주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
- 따라서, 산재 처리기간만 장기화 시키고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간 불신만 가중시키는 사업주 의견제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요양신청서 접수 안내 시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수렴
	내용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접수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내시 사업주가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같이 안내
규제대안1	대안명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 사업주 의견 수렴
	내용	요양급여 통보시 사업주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공단의 사업장 재해조사 시 사업주 의견수렴
규제대안2	대안명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시 사업주 의견 수렴
	내용	요양급여 통보시 사업주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시 사업주 의견 수렴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공단의 요양신청서에 접수 통보시 사업주가 재해조사 조사전에 의견서 제출	○ 요양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 사업주가 의견제출을 위하여 의견을 작성하는데 10일 이상 시간 추가 소요(평균 30.8일)
규제대안1	○ 요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의견제출을 받지 않으므로 처리기간 단축 가능 ○ 재해조사 시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므로 적극행정 가능	○ 사업자가 재해조사 전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사업주 의견이 지체될 수 있음
규제대안2	○ 판정위원회 판정 시 요양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 수렴하므로 판정위원회 중심의 판정 가능	○ 요양신청서 접수시나 재해조사시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업주의 불만이 있을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민주노총	○ 요양신청시 사업주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처리기간만 지연시키므로 사업주 의견 제출을 생략할 필요가 있음	○ 요양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 제출 생략 추진
한국노총	○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을 제출받는 것 보다 공단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진술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됨	○ 요양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 제출 생략 추진 - 공단 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정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	○ 요양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 폐지는 사업주 의견개진 권리 침해, 산재판정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해율 증가로 감독대상 선정 등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주는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제출 가능하므로 권리 침해 아님, - 공단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권한 명확화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요양신청에 대해 사업주 의견에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경위로 사업주 의견을 대체할 수 있고,
 - 업무상 질병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및 취급 정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의견제출의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을 제출받는 것보다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사업장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진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판정위원회 진술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주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또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재해조사시 사업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개정할 예정으로 사업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음

3. 규제목표

- 사업주 의견조회 생략으로 업무상 질병처리기간을 14일~30일 가량 단축시켜 산재보험법의 목적인 신속한 보상을 구현
- 재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재해경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직접적인 의견교환으로 상호 불신을 초래하였으나,
 -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진술 등을 통한 재해근로자, 사업주 의견수렴으로 불필요한 논쟁 해소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의견제출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재해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 의견제출 업무 경감하고 재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사업주의 신뢰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금번 개정안은 요양신청서 접수 안내시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117조에 따른 사업장 조사시 적극적으로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게 함으로써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재해조사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수렴은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요양신청 사실 통보시 사업주 의견수렴하는 것은 재해 조사와 중복되고, 사업주 의견수렴한 내용이 산재 판정결과와 일치율이 60% 미만이므로 재해조사 전에 사업주 의견을 받는 것은 요양 신청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적으므로 현행 법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독일)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발생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있음

○ (일본) 재해노동자가 사업주 증명을 받아 보험급여 청구

○ (프랑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있음

○ (캐나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있음

○ (미국 워싱턴주) 산업재해발생신고를 사업주가 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신고서를 재해자에게 교부하고, 재해자가 단독으로 보상청구

○ 타법사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보험회사 등은 보험금 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실무상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자)와 피해자(손해를 입은 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서로 업무를 처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청구서로 대체
- 사고접수를 피보험자가 하지 않고 직접 청구권을 가진 피해자가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① 피보험자에 사고접수 통지, ②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 지급 여부 확인, ③ △일 이내 회신 없을 경우 보험 개시(가불금 또는 보험금 지급) 예정임을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 서식 없이 공문형태로 발송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신청서에 대하여 별도로 의견제출을 할 필요가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시 서면, 구두 등으로 의견 표명(제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주는 개정 시행 규칙에 대하여 더 편리하게 준수할 수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근로복지공단 현행 재해조사에 절차에 따라 바로 사업주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향후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업주 의견청취를 더 강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담당 직원을 통해 현행 사업주의견 제출을 더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정편성·조정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5.21부터 7.22까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의 8차례 면담*을 통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요양신청서 통보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을 추진하기로 함

* (민주노총 논의) 5.21, 5.26, 6.2, 6.16, 7.7, 7.14, 7.20, 7.22<최종>

- '21.6.1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총, 경총 등과의 업무상질병 간담회*시 사업주 의견제출 논의(한국노총 찬성, 경총 반대)

* (노사 간담회) 6.10, 7.29, 8.25, 9.15 등

- '21.9.16. 업무상질병 의학자문위원회 회의시 직업환경전문 의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일 이전)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소요기간
- (시행일 이후)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소요기간 단축기간

3. 종합결론

- 금번 개정안은 요양신청서 접수 안내시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11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시 적극적으로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게 함으로써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요양신청 사실 통보시 사업주 의견수렴한 내용과 판정결과와의 일치율이 60% 미만이므로 재해조사 전에 사업주 의견을 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음
- 또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경위로 사업주 의견을 대체할 수 있고,

- 특히, 업무상 질병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및 취급 정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대하여 사업장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을 제출받는 것보다 공단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진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사업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판정위원회 진술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주 의견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산재 처리기간만 장기화 시키고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간 불신만 가중시키는 사업주 의견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산재신청 근로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